

시내버스 재정지원

사업 설명

□ 사업목적

- 시내버스 운송비용 대비 운송수입 부족분 보전으로 버스회사의 경영 건전화 유도 및 운송서비스 수준 향상 노력을 통해 버스 이용시민의 만족도 향상

□ 사업근거

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
- 연도별 시내버스 재정지원계획

□ 사업내용

- 지원대상 : 시내버스회사(66개사) 7,485대
- 사업기간 : '15. 1 ~ 12월
- 사업내용
 - 시책추진업무추진비 : 버스정책경영합리화재정지원노선 및 운행관리업무 등에 필요한 업무추진비
 - 시내버스재정지원 : 시내버스 체계개편으로 시내버스 운영이 수입금공동관리제로 변경됨에 따라, 총 운송비용 대비 총 운송수입금 부족액 보전

□ 추진경위

- '14년도 예산액(2,538억원) 지급완료 : '14년 운송비보조액(3,092억원) 일부 지급
 -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대출 예정 : '14년 재정지원 부족액(554억원), 누적이월액(2,927억원)

□ 2015년도 예산(단위 : 천원)

구분	2013결산	2014예산(A)	2015예산(B)	증감(B-A)
계	234,336,483	253,812,900	251,173,831	△2,639,069
시책추진업무추진비	12,960	12,900	12,900	-
시내버스 재정지원	234,323,523	253,800,000	251,160,931	△2,639,069

□ 사업추진 절차

- 시내버스 재정지원
 - 계획수립(시) → 운송수입금 부족분 신청(시←수공협) → 재정지원 집행(시→수공협)
 - 운송수입금은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(버스운송사업조합 대행)에서 공동관리
 - 운송수입금 범위 내에서 시와 조합이 합의한 운송비용 정산지침에 의거 수입금 배분
 - 총비용 대비 총수입금 부족액에 대해서는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서 우리시에

재정지원을 요청하고, 이를 토대로 우리시에서 재정지원

- 시내버스 운송비용 수시 정산(시) : 버스 대당 표준운송원가와 차량별 실제 운행기록 기초로 일별, 월별, 격월, 연단위 정산

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

○ 추진방향

- '15년 재정지원 예산으로 '14년도 미집행 재정지원금과 대출금 우선 상환
- 지급시기가 도래한 '15년 재정지원 금액은 수공협 대출로 우선 총당하고, 이월되는 부족분은 추가재원확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분할 상환
- 경영혁신 노력으로 비용절감, 수익증대 지속 추진
- 요금현실화 방안을 검토하여 적정 시기에 요금인상 추진

○ 추진일정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계획	추진세부내용
계		251,160,931	
시내버스 재정지원계획 수립	'15. 3월		
시내버스 재정지원 집행	'15. 3월~	251,160,931	

실·본부·국	부서명	담당자			
		도시교통본부	버스정책과	버스정책팀장 구재성 (2133-2262)	주무관
		경영지원팀장 이희천 (2133-2271)	주무관	백은주 (2133-2274)	